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897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12352호	백승아의원	2025.8.25.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2025.11.26.)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3532호	김문수의원	2025.10.13.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2025.11.26.)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

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 3. 10.)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을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u>&lt;신 설&gt;</u></p> <p>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2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④ -----          -----  <u>---구성 및 운영---</u>          -----.</p>